#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13 발의연월일: 2024. 9. 27.

발 의 자: 우재준 • 이성권 • 서천호

이달희 • 박성훈 • 김소희

김승수 • 박충권 • 조지연

김선교 · 임종득 · 서일준

김위상 · 임이자 · 박상웅

진종오 의원(16인)

## 제안이유

기후위기 시대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 녹색산업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 문공사업・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수정하며,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의 정의 개념을 확대함(안 제2조).

종전의 환경기술 개념에 기후변화대응 기술,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물관리기술 등 환경 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여 환경기술의 범위를 확대함.

나.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신설함 (안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환경산업체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에 기후대응기금을 추가하고,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자금 지원, 환경기술의 사업화지원을 위한 사업화·경영 컨설팅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다.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 수정함(안 제15조, 제15조의2 신설,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6제3항·제4항 신설 등).

환경전문공사업 운영 시 소상공인 대상 지정취소 예외조항을 추가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대체과징금 제도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지도·점검·자료제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라.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 위탁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31조).

환경부장관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상황에 맞추어 위탁 기관과 내용의 추가·변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법률 제 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을 "개발, 보급을 지원"으로,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을 "환경을 관리·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이나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의 예방·저 감·관리·처리·감시·측정 또는 분석에 관한 기술
  -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술
  -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 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 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 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물관리기술
- 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
- 아.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기술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관리·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재료와 제품을 생산·공급하거나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산업
    - 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다. 그 밖에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환경의 관리· 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3의2. "사업화"란 개발된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생산 또는 공급·제공하거나 이 과정에서 관련된 환경기술 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기술의 개발·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 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④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 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 2. 그 밖에 환경산업에 투자하거나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
-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의2(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정부는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 1. 창업 자금의 지원 및 융자
  - 2. 창업 · 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 1. 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
- 2. 사업화 · 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 3.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 4.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 5. 산 · 학 · 연 환경기술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 6. 화경기술의 융합 촉진 지원
-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검증, 시범사업 및 환경기술 실 용화"를 "기술검증 또는 시범사업"으로, "제6조제3항"을 "제6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 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 2.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 개발사업 지원
- 3.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 4.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제2항 전단 중 "관련 공공기관"을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을 "환경산업체는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민·관 협력의 추진
- 5. 환경산업체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산업"을 "환경산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최"를 "개최 등 해외 홍보 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원"을 "역량 강화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설치·운 영 지원
- 6. 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주 지원

제15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① 시·도지사는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 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법」에 따른 회사"를 "자"로, "회사는"을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실용화"를 "사업화"로 한다.

제16조의6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환경컨설팅회사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6조제3항, 제7조제6항, 제10조제2항"을 "제6조제2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제6항,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를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제3호 중 "기관"을 "법인"으로 한다.

제33조제1호 중 "실용화한"을 "환경기술을 우수하게 사업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기법을 도입한 자
- 3. 생산·유통·사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제1조(목적)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 개발, 보급을 지원-----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 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 1.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 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 한다.
  -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 소 · 처리 기술과 소음 · 진 동 방지 기술
    - (1) 「대기환경보전법」 제

아 개 정

을 관리·보전하며 탄소중립 사 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 하여 ----.

- 기술이나 이를 응용하거나 활 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 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 의 예방 • 저감 • 관리 • 처 리・감시・측정 또는 분석 에 관한 기술
    -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기술
    -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제 5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이 용에 관한 기술

- 염물질
- (2) 「악취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악취
-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 물질
- (4) 「물환경보전법」 제2 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 염물질
- (5) 「토양환경보전법」 제 | 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 염물질 및 폐기물
-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 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 다. 자연환경의 보전 · 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 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 가 기술
-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 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 정・분석 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

- 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 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 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 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 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 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관리 기술
    - 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 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 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
  - 아.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기 술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 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염방지 기술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 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 거나 활용[이하 "실용화 (實用化)"라 한다]하는 기 술
- 2. (생략)
- 3.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음 · 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 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 가. 환경기술을 활용하여 재 설 ·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 한다.
  -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 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 ·예방·최소화·복구 등 에 필요한 시설·장치 또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 업
  - 나.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 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 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자 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

- 2. (현행과 같음)
-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관리 • 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 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 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료와 제품을 생산 · 공급하 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산업
  - 다. 그 밖에 폐자원에 아이디 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 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 업 등 환경의 관리·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전 · 개선에 기여하는 제품 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산업

라. 그 밖에 환경의 보전 • 관 리 ·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신 설>

4. ~ 7. (생략) <신 설>

제3조 (생략)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① 정 |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① 정부 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 | 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의2. "사업화"란 개발된 환경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 <u>비스를 개발·생산</u> 또는 공급 • 제공하거나 이 과정에서 관 련된 환경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 기술의 개발 · 보급 및 환경산업 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 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
- 1.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 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 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출자(出資)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자
- 3.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 4.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

   지의 인증을 받은 자
-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을 하는 사업자
- 6. 환경산업체
- ②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 다.
- 1.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지원 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 2. 특허기술의 실용화 사업
- 3. 환경기술의 실용화에 필요 한 인력, 시설, 정보 등의 지

- 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작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 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있다.

원 및 기술 지도

- 4.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 5. 그 밖에 환경기술의 실용화

   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있다.
- 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④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 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 합
  - 2. 그 밖에 환경산업에 투자하 거나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
-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환경산업체의 창업 지

<신 설>

<신 설>

- 원) 정부는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창업 자금의 지원 및 융자
- 2. 창업 · 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 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 원)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
  - 2. 사업화·경영 컨설팅 및 역 <u>량강화 지원</u>
  - 3.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의 육성
  - 4.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 5. 산·학·연 환경기술 공동기 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저 ~ ⑤ (생 략)

- ⑥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시범사업 및 환경기술 실용화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 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1. · 2. (생략)
- 3.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 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⑦ (생 략)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지원) ① (생 략)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 여 우선하여 제13조의4에 따른

(7) (현행과 같음)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 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 ⑥ (생 략)
-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생 략)
  - ②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환경산업체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 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 2.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 개발사업 지원
- 3.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사업화 지원
- 4.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 2 -----
  - ----- <u>관계 행</u> 정기관, 공공기관-----
  - -----
  - \_\_\_\_\_
  - --. ------
  - \_\_\_\_\_
  - ----.

- ③ (생략)
-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운영)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수 있다.
  - ② (생략)
  -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u>4</u>. · <u>5</u>. (생 략)

④・⑤ (생략)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u>환경산업</u>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2.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운
영) ① 환경산업체는 환경산업
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② (현행과 같음)
③
1. ~ 3. (현행과 같음)
4.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외 민・관 협력의 추진
5. 환경산업체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u>6</u> .· <u>7</u> .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u>환경산업</u>
체
1 • 9 (혀해과 간은)

-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학술 3. 회의의 개최
-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등의 <u>지원</u>
   <신 설>
- ② (생략)
-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지 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 (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 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 ② ~ ④ (생 략)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

3
개최 등 해외 홍보 활동
4.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설
치・운영 지원
5
<u>역량강화 지원</u>
6. 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주 지
<u>원</u>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u>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

   추지 못하게 된 <u>경우</u> <<u>C단서</u>

   신설>

6. ~ 9. (생 략) ⑥ (생 략)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5. -----

- 6. ~ 9. (현행과 같음)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① 시·도지사는 제15조제5 항제5호에 따라 환경전문공사 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 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를 갈 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 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 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과징금 부 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제5 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을 하거나 <sup>'</sup>지방행정제재·부 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15조 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 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 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15조제5항제5호에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 록)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 6. (생략)
-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u>실용화</u> 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 육
- 8. (생략)
- ② (생 략)

16 000 16 10 1
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
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u>다.</u>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
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
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의 세입으로 한다.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
록) ①
<u>자</u>
<u>자는</u>
1. ~ 6. (현행과 같음)
7 <u>사업화</u>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따른 영업정지 처부 대상이 되

록취소 등)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28조(사후관리) ①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 련 업무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 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 등 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 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 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1. (생략)
- 0조제2항 및 제13조의4제2항 에 따라 비용을 지원・보조・ 융자받은 자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 록취소 등)

-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환 경컨설팅회사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거나 자료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도·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del>।</del> 12	28	조	(入	구루	드린	근	4)	(	1	-	 	- —	 	_
-											 	-	 	_
-	- —										 	-	 	_
-	- —										 	_	 	_
-	- —										 	_	 	-
_	- —				· <b>—</b> –	- —					 	-	 	-
-	- —					- —					 	- —	 	_
-											 	_	 	-
-	- —										 			

- 1. (현행과 같음)
- 2. 제6조제3항, 제7조제6항, 제1 2. 제6조제2항, 제6조의2, 제6조 의3, 제7조제6항, 제10조제5항

#### ② ~ ④ (생 략)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저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 · 도 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 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5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 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의2.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 한 국환경산업기술원
- 1의3.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 술 성능의 확인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의4.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 경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_
	_
	_
소속기관	_
<u> </u>	_
<b>.</b>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 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 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 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 수자원공사 및 환경산업 관련 과 기술검증 업무, 제7조의2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다.

- 1의5.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정보의 전산 화 및 관리에 관한 업무: 한국 환경산업기술원
- 1의6.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실 태조사에 관한 업무: 「통계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 지정기관
- 1의7.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 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한국환 경산업기술원
- 2.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 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 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 른 한국환경공단
- 3.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 (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4.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4의2.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조사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4의3.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업무:한국환경산업기술원
- 4의4.
   제16조의14에 따른 표시

   ·광고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5. 제17조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 제18조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 환경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
- 6. 제21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
제)				

- 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다.
- 1. · 2. (생략)
- 3.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u>기관</u>또는 단체
- 제33조(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 환경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u>실용화한</u>
     자
  - 2.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의 도입·실용화와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한 자

<신 설>

1. · 2. (현행과 같음)
3
법인
제33조(포상)
1
환경기술을
우수하게 사업화한
2. 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
스의 설계기법을 도입한 자
3.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

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한 자

3. (생략)

<u>4</u>. (현행 제3호와 같음)